

요식업 종사자

Hospitality industry employees

주방·홀·카페·테이크아웃 — 셰프, 요리사, 주방보조, 웨이터, 바리스타, 매니저

2025-26 회계연도 · FY2026 신고서 기준

공제의 3원칙 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

1. **본인이 직접 지출했고 회사에서 돌려받지 않았을 것** — 회사가 사주거나 비용을 환급(reimbursement)해 준 물건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.
2. **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을 것** — 업무용과 개인용을 함께 쓰는 물건은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공제합니다.
3. **증빙을 보관하고 있을 것** — 대부분의 경우 영수증이 필요합니다. 은행 명세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
소득 신고 시 주의

현금으로 받은 팁(tips)도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. 고용주가 소득명세서(income statement)에 올려주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. 카드 결제에 붙은 팁, 매장에서 모아 나눠주는 팁도 마찬가지입니다.

공제 가능한 항목 What you can claim

✓ 직업 전용 의류

셰프 체크무늬 바지, 흰색 셰프 재킷처럼 그 직업임을 드러내는 옷은 공제 가능합니다.

✓ 보호 장비·의류

미끄럼 방지 신발, 앞치마, 내열복, 자상 방지 장갑 등 실제 부상·질병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물품.

✓ 회사 로고가 있는 필수 유니폼

회사 규정으로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로고가 영구히 부착된 유니폼. 구입·수선·교체비 모두 포함.

✓ 세탁비

위 세 가지에 해당하는 옷의 세탁·건조·다림질. 평상복 세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
✓ 칼과 조리도구

본인이 구입한 셰프 나이프, 조리기구 등 업무에 사용하는 도구.

✓ 같은 날 두 직장 사이 이동

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바로 이동한 거리(양쪽 다 집이 아닐 것). 같은 고용주의 다른 지점으로 이동한 경우도 포함.

✓ 면허·자격증 갱신

RSA, 식품위생증 등 현재 일을 계속하기 위해 갱신하는 비용.

✓ 응급처치 과정

본인이 사업장의 지정 응급처치 담당자이고 교육이 필요한 경우.

✓ 초과근무 식대

초과근무 수당(overtime meal allowance)을 별도 항목으로 받았고 그 수당을 소득에 신고한 경우에 한해, 초과근무 중 사 먹은 식사비. 2025-26년 기준 1회 \$38.65까지는 영수증 없이 가능합니다.

✓ 업무 관련 교육

현재 하고 있는 일의 기술을 유지·향상시키거나 현재 직장에서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 과정.

✓ 전화·인터넷 업무 사용분

본인 휴대폰을 업무에 쓴 비율만큼.

✓ 노조·협회 회비

소득명세서에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그 명세서가 증빙이 됩니다.

공제할 수 없는 항목 What you cannot claim

✗ 검은 바지·흰 셔츠 등 평상복

회사가 입으라고 요구해도, 그 옷을 일할 때만 입어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.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기 때문입니다. 웨이터의 흑백 복장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.

✗ 집과 직장 사이 통근

거리가 멀어도, 새벽·심야 근무라도, 하루에 여러 번 오가도, 스플릿 시프트여도 개인 비용입니다.

✗ 근무 중 먹는 식사·간식·음료

평소 근무시간 중 식사는 개인 비용입니다. 위의 초과근무 식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예외입니다.

✗ 머리·화장·미용 관리

회사가 단정한 용모를 요구하더라도 개인 비용입니다.

✗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

일할 때 필요하더라도 개인 비용입니다.

✗ 운전면허 취득·갱신

운전이 업무 조건이어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
✗ 처음 취득하는 RSA·자격증

취업을 위해 미리 따는 자격증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. 갱신은 가능합니다.

✗ 벌금·과태료

업무 중 발생한 주차 위반, 과속 벌금 모두 공제 불가.

✗ 회사가 제공하거나 환급해 준 모든 것

도구, 보호장비, 유니폼 세탁, 교육비 등.

금액 기준 Key thresholds — 2025-26

항목	기준
자동차 Car expenses	킬로미터당 88센트, 연간 최대 5,000km까지. 이 방법을 쓰면 연료비·정비비·보험료를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.
재택근무 Working from home	시간당 70센트 고정요율. 실제 재택 근무시간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, 추정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세탁 Laundry	업무복만 세탁한 경우 1회당 \$1, 개인 옷과 함께 세탁한 경우 1회당 50센트. 연간 \$150 이하면 영수증이 없어도 됩니다.

경비 합계 \$300 Total work expenses	업무 관련 경비 합계가 \$300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항목에 대해 영수증이 필요합니다.
물품 1개당 \$300 Single asset limit	개당 \$300 이하는 구입한 해에 전액 공제. \$300을 넘으면 사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(decline in value)합니다.
전화·인터넷 Phone and internet	업무 사용이 부수적이고 청구액이 \$50 이하면 별도 기록이 필요 없습니다. \$50을 넘으면 사용 내역이 필요합니다.
소액 경비 Small expenses	건당 \$10 이하는 연간 총 \$200까지 메모(날짜·판매처·금액·내용)로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.
보관 기간 Record retention	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. 감가상각 자산은 마지막으로 공제한 해로부터 5년입니다.

다음 연도(FY2027)에 달라지는 점

2026년 7월 1일부터 근로 관련 경비에 대해 최대 **\$1,000**의 표준공제(standard deduction)가 도입되어, 영수증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. FY2027 신고서부터 적용되며 이번 신고와는 무관합니다. 실제 경비가 \$1,000을 넘는 분은 지금까지처럼 실비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영수증을 계속 모아 주십시오. 또한 FY2027부터는 의류·세탁·수선·드라이클리닝 공제에 **모두 증빙이 필요합니다**. 세탁 \$150 이하 면제 규정은 이번 신고가 마지막입니다.

USQ CHARTERED ACCOUNTANTS

T. +61 3 9070 4790 · mark.kim@unitedsq.com · www.unitedsq.com

Waterman Collins Street, Level 2, 260 Collins Street · 44 Lakeview Drive, Caribbean Park, Scoresby

본 안내는 호주국세청(ATO)의 Hospitality industry employees 직업별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,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본인의 상황에 맞는 판단은 담당 회계사와 상의해 주십시오.

원문: <https://www.ato.gov.au/individuals-and-families/income-deductions-offsets-and-records/guides-for-occupations-and-industries/ek/hospitality-industry-workers-income-and-work-related-deductions>